

2023

CP 운영기준 편람

Contents

CP 운영기준 편람

Part 01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CP)

1.1 CP제도의 이해 2

1.2 CP운영규정 전면개정 ('23) 3

Part 02 Construction (CP의 구축)

2.1 공정거래 자율준수 KPI 4

2.2 CP운영의 책임 및 권한 5

Part 03 Diffusion (CP의 전파 및 확산)

3.1 교육강사 선정기준 6

Part 04 Operation (CP의 운영)

4.1 사전업무 협의제도 7

4.2 위험성 평가 8

4.3 부서별 자율점검 9

4.4 CP 모니터링 10

4.5 인사제재 11

4.6 인센티브 12

Part 05 Evaluation & Feedback (평가 및 개선)

5.1 효과성 평가 13

CP 제도의 이해

[CP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약칭]

I. CP 제도의 의의

- 기업이 공정거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
 - 공정위는 CP 운영실적 기준, 기업별 등급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하도급별점 경감 외 확대 예정)
- * 근거 :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II. CP 도입 인정 요건 (8대 요소)

CP 도입 요건	주요 내용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 실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 지원
3.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가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CP운영 책임 부여
4.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활용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5.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 임직원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 실시
6. 내부 감시 체계 구축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 구축·운영
7.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동일 유사 사안 재발 않도록 예방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정기적으로 CP기준 절차 및 운용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개선

III. 평가등급별 인센티브 (예상)

구분	AAA	AA	A	비고
하도급 별점 경감	2점	1점	-	'21.1.21 신설
과징금 경감(예상)	20%	15%	10%	신설 추진 중 (담합 제외)

CP운영규정 전면 개정 ('23년)

I. 개정 방향

- 실질적인 법 위반 예방 시스템 확립 및 임직원 법 준수 의식 제고
-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내용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운영규정에 반영

II. 주요 내용

1 사전 검토 협의 제도(시행 중) 명시

- 공정거래 이슈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거나 불분명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 필수 사전 협의 : 내부거래 / 표시광고 / 계열사 편입, 기업결합 신고 / 부당특약시스템 등
- 인지 협의 : 공정거래 이슈화 가능성 있는 사안, 모니터링을 통한 인지 사안

2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Tool 적용 (신설)

- CP 기반 법령 파악 / 리스크 식별 분석 평가 / 활동 목표 수립 / 효과성 평가 등

3 부서별 자율 점검 (신설)

-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활용한 자율 점검 실시

4 CP 모니터링 실시 기준 및 절차 구체화 (실시 인원의 자격 요건 신설 등)

- 정기 : CP주관부서는 반기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수시 : CP 관련 문제 발생 또는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CP 효과성 평가 및 개선 (신설)

- 연 1회 이상 / 개선 및 변경 / 차년도 CP계획 수립 반영

III. 기타

- 교육 절차 구체화, CP성과 우수자 인센티브, CP 주관부서 등 용어 정의 등 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KPI ('23년)

I. 전사 KPI 반영 목적

- 임직원 자율준수 의식 제고 및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 지표 설정
- *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그룹 KPI 외 별도로 당사 차원의 지표 추가 설정

II. KPI 반영 지표

- 임직원 자율준수 의식 제고 및 법 위반 예방을 위하여 공정거래 감점 지표 설정 (최대 -2점)

- 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재 발생시 감점 (-1점)
- ② 평가단위 부서별로 교육 이행도를 측정하여 이수율에 따라 감점 (-1점)

III. 목표 달성도 점검 기준

평가등급	S	A+	A	B+	B	C	D
① 공정위 제재	제재 없음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	과징금	검찰 고발
② 교육 달성도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감점점수(각 50%)	-	-0.2	-0.4	-0.6	-0.8	-1	-2

CP 운영 책임 및 권한

I. 이사회

- 이사회는 자율준수관리자 선임하며, CP구축과 효율적 운영 위한 책임과 독립적인 권한 부여
- 자율준수관리자 : ① 이사회 직접 보고 ② 독립성 ③ 적절한 권한 및 지위 ④ 충분한 자원 제공 보장
- 이사회는 CP 운영상황에 대하여 연2회 (상·하반기 각 1회) 검토

II. 대표이사

- 자율준수관리자의 효과적인 CP추진 및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적극 지원

III. 자율준수관리자

직 무	권 한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 자율준수 계획 수립 / 자율준수 교육 관리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4. 법 위반사항 분석·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 5. 법 위반자 제재조치 심의 및 징계위원회 상정 6. 자율준수 활동 및 사안의 대표이사·이사회 보고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3. 법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 4. 법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한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IV. 준법협의회

위 원	실천리더
1. 자율준수관리자 지원 2. 공정거래 실천리더 지휘 감독, 소속 부문 CP운영 3. 소속 부문 참여 유도 및 교육이행, 법 위반 방지 4. 소속 부문 위반 요소 및 CP 운영 개선사항 발굴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2. 소속 부문의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 3. 공정거래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소속 부문 전파 4. 소속 부문 참여 유도 및 법령 준수 점검, 점검 결과 CP주관부서 통보 5. 소속 부문 위반 요소 및 CP운영 개선사항 발굴 위반 발생시 자율준수관리자(CP주관부서) 통보

IV. 임직원

- 법 준수 의무, 위반 가능성 있는 업무는 CP주관부서 사전 자문, 법령 위반 인지 신속 보고

교육강사 선정 기준

I. 사외 강사

- ① 법무법인, 교육연구기관, 전문기관(공정경쟁연합회 등), 정부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 ② 변호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년 이상인 자

II. 사내 강사

- ①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내 변호사
- ②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전문교육기관 교육 이수, 전공, 관련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관련 지식이 풍부하다고 자율준수관리자가 특별히 인정한 자

III. 기타

- AI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개발 등은 상기 강사 선정 기준을 충족한 자가 직접 작성하여 시행하거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사전업무 협의절차

I. 목적

- 업무 추진 여부의 최종 의사결정 이전에 유관부서의 검토를 통해 법 위반 사전 점검 및 예방

II. 운영기준 및 처리 절차

1. 협의 대상

필수 협의 사안	인지 협의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거래 수의계약 - 하도급 계약 (부당특약시스템) - 표시광고 (분양광고 등) - 기업결합신고 or 계열회사 편입 등 - 담합 예방 시스템 (출장시 체크리스트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크 협의사안 · 추진부서의 자율적인 사전 리스크 판단 협의 요청 - 모니터링 점검 ·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전 리스크 판단이 필요 사안 인지시

2. 처리 절차

NO	내용	상세 내용	비고
1	협의체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부서 기획부문, 정책지원, 법무실 등 협의 	
1-1	필수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 주관부서, 정책지원1팀 등 유관부서 필수 검토 	
1-2	인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 이슈 발생 등 협의 필요 사안 검토 요청 	법무관리시스템 상시
2	외부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분명한 사안 등 필요시 외부 로펌 등 자문 추진 	
3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주관부서에서 검토/협의 결과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개선 협의 및 개선 지시
4	결과 통보 및 이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개선사항 실행부서 통보 및 이행사항 점검 	

III. 협의체 역할

실행부서	사전업무협의체	자율준수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본부, 지원부서 등 계약 관련 · 협의사안 사실관계 정리 · 검토 요청 자료 작성 ·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주관부서, 법무실, 정책지원1팀, 사업본부 기획/총괄, 재정, IT 지원실 등 · 법률 리스크 검토 · 시스템 개발 지원 · CP주관부서 :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결과 중 개선사항 발생시 · 개선 협의 · 개선방안 실행 지시 · CP주관부서 : 개선안 통지

위험성 평가기준 / 프로세스

I. 목적

- 체계적인 위험성 식별을 통하여 효과적인 위험성 통제 체계 수립

* 위험성 식별 평가표를 활용하여 부문별 위험성 분석 및 리스크 통제 방안 수립

II. 위험성 평가 절차

순	항목	내용
1	위험성 식별	<p>□ 공정거래 관련 법령 분석 및 발생 가능 위험성 식별</p> <p>* 당사 미칠 영향 파악 및 발생 원인 분석 포함</p>
2	위험성 분석 및 통제방안 검토	<p>□ 리스크 분석 및 통제 방안 수립 및 잔여 리스크 파악</p> <p>1. 위험성 구분 Matrix</p> <p>- 발생 가능성, 처분 영향을 지표화, 점수 산정 → 고유 리스크 분류 (상,중,하 3단계)</p> <p>* 산출 점수 : 1 미만 - 수용 / 5 미만 - 하, 12 미만 - 중 / 25 미만 - 상</p> <p>2. 고유 리스크 단계별, 통제 방안 수립 및 유효성 평가</p> <p>- 리스크 중(M) 이상인 경우 추가 통제 방안 적용 (2차)</p> <p>* 2차 통제 방안 적용 후에도 리스크 중(M) 이상인 경우 추가 통제방안(3차) 적용</p> <p>유효성 평가 : 고유 리스크 평가값 × 통제방안 유효성 값(%) [1차+2차] → 감소된 리스크 값</p> <p>※ 유효성 값 : 매우 높음 -90%, 높음 -70%, 보통 -60%, 낮음 -40%, 매우 낮음 -20%</p> <p>3. 잔여 리스크 평가</p> <p>- 잔여 리스크 = 고유 리스크 평가값 - 통제방안 유효성 평가 합계 값 (감소 리스크)</p>
3	부서별 목표	□ 前 단계의 통제방안에 대한 유지·보완·개선 방안 수립 및 검토
4	모니터링	<p>□ 각 통제 방안의 실행 검토 및 통제방안 유효성에 대한 효과성 평가</p> <p>* 달성 조건 : 효과성 ≥ 유효성</p>

부서별 자율점검 기준

I. 부서별 실시 책임자의 역할

- 자율준수관리자는 각 부서의 장을 부서별 실시책임자로 임명한다.
- 실시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결과를 CP전담부서에 보고한다.

① 부서별 CP 실시 상황 자율점검

- 가. 소속부서의 CP 기준 · 절차 이행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 나. 소속부서의 CP 활동 목표 수립 및 그 달성수준(효과성) 점검
- 다. 소속부서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배포 및 활용상태 점검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요사항 부서 내 전파

③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방침 · 실천 의지,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결과, 사전검토 · 협의 프로세스, 내부고발 절차, CP 실시계획 등의 소속부서원 주지

II. 부서별 자율점검 절차

① 실시책임자는 소속 부서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시 편람의 자율점검 Check list를 활용하여 CP 기준 · 절차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임직원은 자율점검 결과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주관부서 등을 통해 위반 여부 검토 후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실시 책임자는 반기 1회 이상 다음 사항을 점검 후 그 결과를 전담부서에 보고한다

- 소속부서의 CP 기준 · 절차 이행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소속부서의 CP 활동목표 이행 여부 또는 달성 수준 (효과성)
- 소속부서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배포 및 활용 실적

CP 모니터링 기준

I. CP 모니터링 대상

- ① 회사 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직무행위의 CP 기준 · 절차 위반 여부 점검
- ② 회사 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직무행위의 법령 위반 여부 점검

II. 운영 기준

- ① CP주관부서는 반기 1회 이상 CP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CP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실시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III. CP모니터링 담당자 자격

- ① 컴플라이언스 관련(법무, 회계, 감사, 윤리, 공정거래, 준법 감시 등)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원
- ② 사내 변호사, 회계사, CCP(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내부 심사원 등
- ③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적격성 판단을 받은 인원
- ④ 외부 감사 및 평가 기관

IV. 자율준수관리자의 모니터링 실시 책임

- ① CP모니터링 담당인원 구성
- ②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실태 점검 및 조사
- ③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및 그 결과의 이사회 보고
- ④ 모니터링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제재

I. 목적

- 법 위반자 제재를 통하여 동일·유사 사건 재발방지 및 CP운영의 투명성·신뢰성·효과성 제고

II. 제재의 원칙

- ①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수행 관련, 본 운영기준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함이 원칙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한다. (CP운영규정,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III.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위반자	위반 부서
<p>1. 상벌위원회 회부</p> <p>(1) (공정위 사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 초래</p> <p>(2) 자율준수관리자의 주의/경고, 시정요구에도 위반 반복</p> <p>(3) 법령 위반소지가 높아 회사의 막대한 손실 예상하고도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진행</p> <p>(4)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 허위로 작성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미제출</p> <p>2. 주의 또는 경고</p> <p>(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준수 태만</p> <p>(2)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 자료 제출 지연, 태만</p> <p>(3) 모니터링 수행 거부, 방해, 기피</p> <p>(4)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사항 또는 시정조치 이행 지연, 태만</p>	<p>1. 부서(실, 팀) 주의 또는 경고</p> <p>(1) 위반자의 위반행위가 임원 또는 담당 팀장 주관하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위반정도 비교적 경미</p> <p>(2) 동일, 유사한 유형의 내부제보가 집단적으로 제기</p> <p>2. 법 위반 방지 교육</p> <p>(1)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 또는 시정조치</p> <p>(2) 법 위반소지 높아 자율준수관리자가 특별교육 필요 판단</p> <p>(3) 기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무수행 등으로 제재 외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자율준수관리자가 판단</p>

IV. 제재의 절차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중대한 위반자 행위자를 상벌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한다
- ② 상벌위원회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준을 정하고 제재조치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사항이 경미한 임직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포상 / 인센티브

I. 목적

- 임직원 자율준수 의식 제고하고, CP문화 확산을 위하여 모범 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II. 대상 및 포상사유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개인, 조직 등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건의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① 내부제보자
- ② CP 점검 우수조직
- ③ 자율준수협의회 우수 위원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
- ④ 교육이수 우수자
- ⑤ 실시 책임자
- ⑥ 주관부서 직원
- ⑦ CP 추진 성과 우수자 등 공정거래 문화 활성화 기여자
- ⑧ 제⑦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율준수관리자가 인정한 자

III. 포상 기준

- 가점 : 시스템 개선 등 범위반 방지체계 수립, CP 확산 기여 행사/활동 수행
- 감점 : 하도급 분쟁, 사전협의대상 미협의, 서약서 미제출 등 (법 위반은 포상 대상 제외)

CP 효과성 평가 기준

I. 목적

- 시행하고 있는 CP프로그램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 예방에 대한 효과성 정기적 검토 필요

II. CP효과성 평가 측정지표 개발

- 자율준수관리자는 CP효과성(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지표를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한다.

- ① 부서별 CP활동 목표의 달성 수준 및 이를 통해 법령 위반 리스크 경감 기여 정도
- ② CP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인식도)

III. 운영 기준

1. 자율준수관리자는 연 1회 이상 CP운영의 성과를 평가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의 성과 평가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한다.
3. CP평가는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 성과 평가를 위해 인식도 조사, 직접 관찰, 공식 인터뷰, 설문조사(피드백) 등을 실시할 수 있다.

VI. 개선

1.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 성과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차년도 CP 실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한다.
2.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는 보고 받은 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CP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 CP의 개선 및 변경결정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① 최고경영자의 CP 실천의지 표명의 지속성 및 효과성
- ② 모니터링 및 CP 감사가 필요한 영역
- ③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책의 효과성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